

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(제17조 관련)

1.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

가. 일시 청소년쉼터

1) 고정형

구분	기준
입지조건	■ 시설의 적절한 분포와 보건·위생·급수·안전·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
건물형태	■ 단독건물 또는 상가건물 ■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
침실	■ 남·여용 구분 설치 ■ 채광,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
조리실·식당	■ 채광 및 환기 가능 구조 ■ 위생적인 취사·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
화장실·목욕실	■ 남·여용 구분 설치 ■ 수세식 화장실, 세면·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
세탁·건조장	■ 세탁 및 건조용 설비
상담실	■ 칸막이 또는 방음장치를 설치하여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
단체활동실	■ 15명 이상(수용정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수용정원의 120퍼센트 이상)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
사무실	■ 사무를 위한 설비를 갖춘 분리된 공간 ■ 이동형 일시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 고정형 일시쉼터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별도의 사무실
비상재해대비시설	■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·구비

2) 이동형

구분	기준
차량	■ 대형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차량
휴게공간	■ 간이침대, 소파 등 휴게용 시설 ■ 조리시설 및 식탁 ■ 인터넷 및 문화공간 등 단체활동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.
상담공간	■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 및 설비 ■ 응급 약품
사무실	■ 업무용 책상 및 컴퓨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 ※ 이동형 차량과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
비상재해대비시설	■ 소화기

나. 단기·중장기 청소년쉼터

구분	기준
입지조건	■ 시설의 적절한 분포와 보건·위생·급수·안전·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
건물형태	■ 단독건물, 연립주택, 상가건물, 아파트 등 ■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
침실	■ 채광,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
조리실·식당	■ 채광 및 환기 가능 ■ 위생적인 취사·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
화장실·목욕실	■ 남·여용 구분 설치 ■ 수세식 화장실, 세면·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
세탁·건조장	■ 세탁 및 건조용 설비
상담실	■ 칸막이 또는 방음장치를 설치하여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
단체활동실	■ 15명 이상(수용정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수용정원의 120 퍼센트 이상)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
사무실	■ 사무를 위한 컴퓨터, 책상 등 설비를 갖춘 공간
숙직실	■ 숙직을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
비상재해 대비시설	■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·구비

다. 청소년자립지원관

1) 숙박형 생활시설: 숙박 등 생활 지원과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

구분	기준
입지조건	■ 시설의 적절한 분포와 보건·위생·급수·안전·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
건물형태	■ 단독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 등 ■ 수용 인원 1명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
침실	■ 남성용·여성용 구분 설치 ■ 채광,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
조리실·식당	■ 채광 및 환기 가능 ■ 위생적인 취사·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
화장실·목욕실	■ 남성용·여성용 구분 설치 ■ 수세식 화장실, 세면·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
세탁·건조장	■ 세탁 및 건조용 설비
상담실·사무실 ·숙직실	■ 상담 및 사무를 위한 컴퓨터, 책상 등 적절한 설비 구비 ■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숙직실로 통합운영 가능
비상재해 대비시설	■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 및 구비

2) 비숙박형 이용시설: 숙박 지원이 없이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

구분	기준
입지조건	■ 시설의 적절한 분포와 보건·위생·급수·안전·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
시설형태	■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
화장실	■ 남성용·여성용 구분 설치 ■ 수세식 화장실, 세면 설비 및 온수 공급
상담실·사무실	■ 상담 및 사무를 위한 컴퓨터, 책상 등 적절한 설비 구비 ■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운영 가능
비상재해 대비시설	■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 및 구비

라. 청소년치료재활센터

구분		기준
공동생활시설		· 남·여용 구분 설치 · 1개의 공동생활시설은 5~7명의 청소년 및 보호·자립지원 요원 1명이 가족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주형 공간 마련 · 채광·환기 및 냉난방이 가능한 침실을 설치 · 휴식을 취하거나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마련 · 간단한 요리가 가능한 시설 설치 · 변기, 세면대와 샤워부스가 갖춰진 위생 공간 및 간단한 세탁을 위한 설비 마련 · 생활지도를 위한 사무실 및 보호·자립지원 요원 침실을 설치
교육·재활 훈련시설	학습실	· 1실당 10명 이상의 청소년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
	공연실	· 각종 공연활동과 심리극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
	체육활동실	· 단체 체육활동이 가능한 공간
	진로체험실	· 진로체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공간
	다목적실	· 다양한 소규모 활동이 가능한 공간
	생태체험실	· 다양한 생태문화를 접할 수 있는 산책로와 생태체험 공간
	의무실	· 진찰,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공간 · 응급환자를 위한 대비시설 및 비상약품 상비
전문치료시설	심리검사실	· 지능검사, 성격검사, 적성검사 및 학력검사가 가능하고, 방음시설이 마련된 공간
	심리치료실	· 놀이, 미술, 음악 등을 이용한 심리치료 공간

		· 개인치료와 집단치료 공간을 분리하되, 자유롭고 안전하며 안락한 분위기로 조성하고, 방음시설을 구비
	관찰실	· 상담상황 및 안전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 · 입소 청소년의 보호자가 입소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
	상담실	·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이 가능하고,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이 마련된 공간
편의시설	휴게실	· 입소 청소년의 휴식, 이용편의와 정서 안정을 위한 실내 및 실외 휴게 공간
	조리실, 식당	· 위생적인 취사·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의 구비 · 입소 청소년 전원이 함께 식사가 가능한 공간 마련
	세탁·건조장	· 세탁 및 건조 설비를 갖춘 공간
	화장실·목욕실	· 남·여용 구분 설치 · 수세식 화장실, 세면·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
지원시설	사무실	· 업무용 책상, 컴퓨터 등 사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공간
	숙직실	· 숙직을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
	보호자실	· 보호자 대기 시 이용편의를 위한 공간 · 보호자를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

마. 청소년회복지원시설

구분	기준
1) 입지조건	·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·위생·급수·안전·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
2) 건물형태	· 단독주택, 연립주택, 상가건물 또는 아파트 등 · 입소인원 1명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이고, 최소 5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을 것
3) 침실	· 채광, 환기 및 냉난방이 가능한 공간
4) 사무실	· 사무를 위한 컴퓨터 및 책상 등의 설비를 갖춘 공간
5) 숙직실	· 숙직을 위한 침구류 등을 갖춘 공간
6) 상담실	·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춘 공간
7) 조리실·식당	·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공간 · 위생적인 취사·조리 및 식기소독 설비를 갖춘 공간
8) 화장실·목욕실	· 수세식 화장실 · 목욕실은 세면·샤워 설비를 갖추고 온수 공급이 가능한 공

	간
9) 세탁·건조장	· 세탁 및 건조용 설비
10) 비상재해 대비시설	·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 대비시설 및 장 비의 설치·구비

비고: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간에는 하나의 공간에 설치하여 겸용할 수 있다.

1. 사무실, 숙직실 또는 상담실
2. 조리실·식당 또는 세탁·건조장
3. 화장실·목욕실 또는 세탁·건조장

2.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기준

가. 관리규정

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.

- 1)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방침
- 2) 정원 및 직원의 업무 분장
- 3)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 요령
- 4) 청소년복지시설의 이용 수칙
- 5) 그 밖에 청소년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

나. 장부 등의 비치

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(전자적 파일 형태의 장부 및 서류를 포함한다)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- 1) 관리에 관한 장부
 - 가) 청소년복지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
 - 나) 직원 관계철(인사기록카드·이력서·사진을 포함한다)
 - 다) 회의록
 - 라)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에 관한 서류
 - 마) 문서철(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 또는 수신한 문서를 포함한다)
 - 바) 문서접수·발송대장
- 2) 사업에 관한 장부
 - 가)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자 관계 서류(신상조사서, 건강기록부, 입소자·퇴소자 명단, 보호의 경과, 지도·상담, 법률 지원의 내용 등). 다만,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·퇴소자 명단을 갈음하여 감호소년명부를 갖추어 둘 수 있으며, 보호의 경과에 관한 서류는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다.
 - 나)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
 - 다)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(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)

라) 종사자 교육·훈련 관계 서류

3) 재무·회계에 관한 장부

가) 총계정원장(總計定元帳) 및 수입·지출 보조부

나) 금전출납부(金錢出納簿) 및 그 증명서류

다) 예산서 및 결산서

라) 삭제 <2019. 7. 2.>

마) 비품관리대장

바) 재산대장·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사)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

아) 감호비용의 수입·지출 및 집행상황에 관한 서류(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
만 해당한다)

자) 각종 증명서류

다. 그 밖의 사항

청소년회복지원시설 안에서는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청소년회복지원
시설 종사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한다.